

##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오뚜기제유지주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한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20년 7월 14일부터 2020년 7월 29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26일

주식회사 오뚜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 (평촌동)

대표이사 이 강 훈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B국민은행장 허 인